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84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을 "가구원(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한다.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제14조의3제1항 중 "부양의무자"를 각각 "가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양의무자가"를 "가구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양의무자"를 "가구원"으로 한다.

제63조 전단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을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으로 한다.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생계급

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 ① (생 략)	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u>부양의무자(부양의무</u>	<u>가구원(생활조정수당</u>
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u>는</u>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u>하 같다)은</u>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제14조의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 ①・② (생 략)	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③
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	
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	
원이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	

- 우 제2항에 따른 서면 제출은 생략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를 받고 있을 것
- 2. · 3. (생략)
- ④ (생략)
-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 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수 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 자(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 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양의 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 ·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 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 조정수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 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 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 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
2.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3(조사·질문 등) ①
<u>가구원</u>
<u>가구원</u>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생 략)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
당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
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
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
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⑤ (생 략)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4조의2제2항에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 금융회사등 및

③ (현행과 같음)
4
가구원이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u>가</u>
<u> 구원이</u>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 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 신용 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 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 수당수급자와 그 <u>부양의무자</u>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 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 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 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63조(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저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 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전상군경, 공상군 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

②
<u>가구원</u>
③ ~ ⑦ (현행과 같음)
∥63조(양로지원)

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수 있다.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
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
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국
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
・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u>부양의무자(부양의</u>
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
<u>다)가 없는</u>
법률 제202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_ , , • • ,,
_ , , • • ,,
_ , , • • ,,
_ , , • • ,,
_ , , • • ,,
_ , , • • ,,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제77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 에 따라야 한다.

- 1. ~ 14. (생 략)
- ② ~ ④ (생 략)

	.	
1 1	14 /되케키	7]. Ó)

- 1. ~ 1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1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O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기존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던 788명이 추가로 수급받게 됨에 따라 매년 28억원씩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6	2027	2028	합계	연평균
	생활조정수당	2,844	2,844	2,844	2,844	2,844	14,220	2,844
지출								
	소 계(A)	2,844	2,844	2,844	2,844	2,844	14,220	2,844
수입								
	소 계(B)							
총 비용(A-B)		2,844	2,844	2,844	2,844	2,844	14,220	2,844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14조의2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기존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가 추가됨에 따라 예산 소요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14조의2	역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총 수혜인원은 약 1만 4천여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온 까닭에 **지원대상 중 1만 3천여명은 이미 24년 예산에** 반영되어있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 폐지 시 예상되는 **추가 수혜인원은 788명에** 불과하여 **788명에 대한 추계만 첨부함**
- O '24년 기준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생활조정수당은 가구원 수(4인 미만, 이상)와 생활수준(기준 중위소득 32%, 40%, 50%)에 따라 월 24.2만원에서 37만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787명을 가구원 수별, 생활수준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음

구 분	2025년(예산)			
T	단가(천원)	인원(명)	예산(천원)	
	50%이하 242		85	246,840
3인이하	40%이하	277	96	319,104
	32%이하	311	576	2,149,632
	50%이하	300	7	25,200
4인이상	40%이하	336	8	32,256
	32%이하	370	16	71,040
소계		788	2,844,072	

IV. 부대의견

- O 수급예상자 중 사망인원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O '24년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지급액 인상 시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손정환 주무관	조건희 사무관	김민영 보상정책과장	황의균 보상정책국장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건희	010-9799-4864	jo3282@naver.com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향후 5년 간 재정소요 총 142억원을 전액 일반회계로 조달 예정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 회계·기금 간 전입	2,844	2,844	2,844	2,844	2,844	14,220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2,844	2,844	2,844	2,844	2,844	14,220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O 조세수입 등으로 조달된 일반회계로 집행될 예정으로,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려움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2,844	2,844	2,844	2,844	2,844	14,220
○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0						
〈합 계〉	2,844	2,844	2,844	2,844	2,844	14,220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조세수입 등으로 조달된 일반회계로 집행될 예정으로,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기는 어려움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O 해당사항 없음

IV. 부대의견

O 해당사항 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혐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04 F	기획재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라 '23년부터				
'24.5	/ 기축세경구 	예정된 사항으로 이견 없음				

Ⅵ. 작성자

O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손정환 주무관	조건희 사무관	김민영 보상정책과장	황의균 보상정책국장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조건희	010-9799-4864	jo3282@naver.com